

H1B 취업비자와 쿼터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 중에 H1B 는 흔히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취업비자라 불리웁니다. H1B 비자 직업군이 변호사나 의사 등 꼭 전문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외국인 고용인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민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직업군이 H1B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단기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는 매년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용 65,000 개와 석사학위용 20,000 여개로 매년 그 비자승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학사용 65,000 개는 싱가포르, 칠레 국민에 제한하여 6,800 여개 비자 승인 쿼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실제적인 쿼터는 58,200 개입니다.

이 쿼터는 매년 4 월 1 일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며칠만에 전국적인 쿼터가 모두 소진되었으나, 불경기가 시작된 지난 몇년간은 8-10 개월만에 쿼터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회복 조짐이 보여 기업들의 취업비자 신청이 증가, 2013 년 회계연도의 H1B 비자는 2012 년 4 월 27 일을 기준으로 이미 29,200 개의 쿼터가 소진되었습니다. 때문에 H1B 취업비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접수를 서둘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 쿼터에 대한 예외경우가 있습니다. (1) 대학, 비영리 법인,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이, (2) 해당 연도 이전의 H1B 쿼터에 해당되어 비자를 발급받은 이, (3) J-1 비자의 2 년 보국 거주 의무조항을 면제해주는 Conrad 20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 (4) H1B 신분상태로 이미 체류 연장을 한 이, (5)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동일한 고용주와 근무를 위해 H1B 를 개정한 이 등입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지원자의 교육배경과 근무경험 등을 증명하여 근무하게 될 직업, 직책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은 학사학위 전공과 근무직책이 관련업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학사학위가 미국의 학위와 동등하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학사학위가 없고, 2 년제 대학졸업이나 고졸일 경우에는

관련업 근무경험 3년을 1년의 대학기간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때문에 학사학위가 없어도 케이스에 따라 직업경력을 잘 설명할 경우, H1B 취업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H1B 취업 비자 케이스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서류상 한국에서의 학사학위 전공과 현재 취업하려는 미국의 직업, 직책이 전혀 상관이 없는 고객님의 케이스가 있었으나 그 직업의 희소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잘 강조하고, 판례들을 잘 적용하여 H1B 취업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판례와 법 등 법적인 리서치 외에도 직업군에 대한 방대한 리서치와 연구 등이 필요합니다.

H1B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비자 스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LCA 라고 불리는 고용주서약 규정은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전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시간당 급여는 얼마인지, 몇년간 일할 것인지, 외국인 고용인이 돌아갈 경우 교통편을 후원하겠다는 등에 대해 노동부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경쟁을 제한하여 미국취업시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로, H1B 취업 비자 신청의 첫단계입니다. 그 후, 고용주와 외국인 고용인의 비자지원서 및 다른 보충 서류 등을 통합하여 이민국에 비자 청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H1B 비자 승인기간은 수개월이 걸리나, 급행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H1B 비자를 받으면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간 미국에서의 단기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허가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영주권 등 이민 비자 청원이 승인이 되었다면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터 비자 스폰을 한 고용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미국안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10월 1일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1 과 OPT 등의 신분을 가진 학생에 한해서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 역시 10월 1일전까지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H1B 비자를 취득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H-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닐 수는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H1B 와 H-4

비자를 취득한 분들은 한국을 포함 해외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먼저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H1B 취업비자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비자승인을 받아냈으며, 최근에는 거절이 된 케이스를 항소하여 결국 비자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시에는 쿼터 소진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학위나 경력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305) 372-7776

웹사이트: www.stevesuh.com